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 윤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Ⅰ. 주요내용

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난임시술 현황 등에 난임시술결과의 부작용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11조의6제2항제4호).

Ⅱ. 검토의견

○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있으나, 법률상 오류를 수정하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

(전문위원 이 은 정)